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7. 3 선고 2023가단6188 판결 [구상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4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49,740,12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8. 23.부터 2023. 9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보통여객 자동차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,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원고 소유의 (차량번호 1 생략) 쏘나타 택시(이하 ‘이 사건 택시’라 한다)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. 나. 피고는 2019. 11. 21. 21:02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지하차도 출구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상암동 방면에서 증산3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백색 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(차량번호 2 생략)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는 이 사건 택시를 보고 급제동하다 넘어져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 C이 다치고,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라 한다). 다.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가입한 D공제조합에 2022. 2. 24.부터 2022. 8. 23.까지 자동차공제약관 제11조에 따른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으로 합계 49,740,12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9. 3. 16. 피고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, 위 근로계약서 제23조 제1항은 “근로자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진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’인데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 중과실의 경우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또는 종합보험가입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 내지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나.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중과실 내지 고의¹⁾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사고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[이에 대하여 피고는,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(이하 ‘택시발전법’이라고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

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택시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에서 제외하고 있고, 2)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 내지 고의로 발생한 것이므로,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].

다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9,740,12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최종 손해발생시점일인 2022. 8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9. 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양은상

1) 위 근로계약서 제1항의 해석 내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)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,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(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인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"교통사고 처리비"라 한다)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(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).